

과태료 부과기준(제24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 - 1)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2)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
 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	법 제38조 제1항	3,000		
나.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	법 제38조 제2항	2,000		
다.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	법 제38조 제3항			
1)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		500	800	1,000

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			
2)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	500	800	1,000
3)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	500	800	1,000
라. 법 제37조 각 호의 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	법 제38조 제4항	1,000		